

『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,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향토생활관에 입사시켜 지역 학생들의 학업분위기를 향상시키고,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경일대학교
- 소 재 지 :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
- 출연예정액 : 200백만원

○ 주요 사업

- 경일대 향토생활관 지원
 - 향토생활관 이용 협약 체결 및 20명 입사자격 부여
 - 지자체 추천자 생활관비 50% 장학금 지급(5년/년 90만원, 1인당)

○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학생들의 학업분위기 향상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관·학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 기여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교육기본법」 제27조
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-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지역 학생들의 학업분위기를 향상시키고,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